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99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9.

권 숙 자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권숙자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에서 가족으로 그 대상 범위를 변경 및 확대하는 것으로
-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나아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3조제1항에서 제3항의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 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23조제2항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주차장법」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1조의2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9. 1. ~ 9. 11.):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여 불법주차 감소, 주변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향후 본 조례안을 시행함으로써 주차장 공유에 따른 주차편의 제공 및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숙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3101
----------	----------

발의연월일: 2023. 9. 1.

발의자: 권숙자, 이진환, 김장관,
남현주, 이영빈, 서민우,
김정희, 손범구, 정창근,
도하석, 김기열

1. 제안이유

-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조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차장의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 확대(안 제23조 제1항 ~ 제4항)
※ (이용대상) 여성운전자 →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 「주차장법」 제6조
-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통하여 여성이”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배려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본다.

[별표 8]

가족배려주차구역 주차구획(제23조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 표시 방법

- 가. 규격 : 가로 2.8m 이상 × 세로 5m 이상
- 나. 색채 및 표시 :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2. 그림문자 표시 방법

- 가. 규격 : 가로 140cm × 세로 140cm
- 나. 색채 : 꽃담황토색
- 다. 설치위치 : 주차면 중앙에 표시
- 라. 가족배려주차구역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붙임 2**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3조(<u>여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u>) ① <u>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상의 여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23조(<u>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u>) ① <u>공영주차장 ----- ----- ----- ----- ----- ----- ----- 가족배려주차구역 ----- -----</u> -.
<신 설>	② <u>가족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
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
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② 여성 배려 주차구역은 CCTV 감시가 용이하고 이동성, 안전성이 있는 위치에 설정하고 조명도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여성 배려 주차구역의 주차구획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가족 배려 주차구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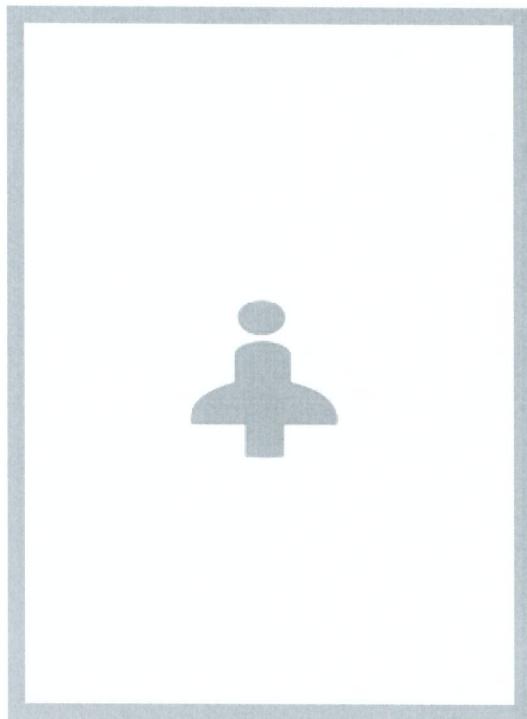
통하여 -----

④ 가족 배려 주차구역 -----

[별표 8]

여성배려주차구역

주차구획(제23조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 표시 방법

가. 규격 : 가로 2.8m 이상 × 세로
5m 이상

나. 색채 및 표시 : 분홍색 실선
으로 표시

2.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시 방법

가. 규격 : 가로 75cm × 세로 155cm

나. 색채 : 분홍색

다. 설치위치 : 주차면 중앙에 표시

[별표 8]

가족배려주차구역

주차구획(제23조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 표시 방법

가. 규격 : 가로 2.8m 이상 × 세로
5m 이상

나. 색채 및 표시 :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2. 그림문자 표시 방법

가. 규격 : 가로 140cm × 세로 140cm

나. 색채 : 꽃담황토색

다. 설치위치 : 주차면 중앙에 표시

라. 가족배려주차구역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
으로 병기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